데이터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339호

데이터관리 규정

확 정 일 : 2025년 7월 30일

시 행 일 : 2025년 9월 1일

데이터관리 규정 제정(안)

1. 제안 이유

전사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데이터관리 규정 제정

2. 주요골자

가. 데이터관리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나. 데이터관리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데이터관리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7조)

라. 데이터관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제9조)

마. 데이터 표준·구조·연계데이터·품질·오류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14조)

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제17조)

사.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제19조)

데이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데이터의 생성·수집·관리·이용·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2. “LH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 관리체계”란 데이터를 일관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원칙, 정책, 역할 및 절차 등의 관리체계를 말한다.
4.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란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5. “데이터 생애주기”란 데이터의 생성에서 폐기되기까지의 생애주기로, 생성, 수집, 가공, 저장, 제공, 활용, 폐기 단계를 말한다.

6. “데이터 표준”이란 공사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용어, 정의, 형식, 규칙 등에 대한 원칙을 말한다.

7. “데이터 표준관리”란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등의 표준사전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8. “메타데이터(Metadata)”란 명칭, 설명, 관리담당자, 생명주기 등 관리 및 탐색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말한다.

9. “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DB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10.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값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1.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고 저품질을 개선함으로써 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DB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3. “데이터 보유부서”란 각 소관 업무의 정책, 지침, 절차, 기준 수립 및 업무 개선사항 도출 등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운영·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4. “데이터 총괄부서”란 전사 데이터관리 전담조직으로 데이터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활동 전반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데이터 분석부서”란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시각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를 포함하여 데이터관리에 관한 활동 전반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정보화총괄부서”란 공사의 정보화 정책, 정보화 계획, 정보화 사업, 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데이터플랫폼”이란 데이터의 생성,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 활용까지 데이터의 전 생애주기가 이루어지는 토대로 기능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8. “데이터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 이슈”란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데 존재하는 제약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 및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은 데이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공사에서 기존에 보유하였거나 새로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에 적용되며 생성에서 폐기에 이르는 데이터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 적용한다.

③ 공사의 데이터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사는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 직원 누구든지 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개인이 본인의 직무범위 외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내부의 데이터 열람·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정하여 따르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공사 직원간 또는 부서간 자유롭게 유통·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비밀 및 보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규정한 제공대상 범위 내에서 공사가 생성·수집·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공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적 목적의 이용인 경우에도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사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제11조에서 규정한 제공대상 범위 내에서 공사가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사의 모든 데이터는 생성부터 수집, 처리, 저장, 제공, 활용,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신뢰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사의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과 공사의 정책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데이터책임관) ① 공사는 전사 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총괄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의 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서 정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서 정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6조의 데이터담당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데이터담당관)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데이터책임관을 보좌하여 공사의 데이터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전담인력을 두어 전사 데이터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사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데이터 정책과 과제에 대한 심의, 전사 차원 데이터 이슈 협의 등을 위해 데이터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위원회 등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데이터 관리계획

제8조(데이터 관리계획) ① 데이터담당관은 정부 데이터 정책 및 공사 데이터관리 업무를 고려하여 전사 차원의 연단위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데이터관리 시행계획
2.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9조(데이터관리지침) 데이터관리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데이터관리 추진

제10조(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총괄부서는 데이터 표준을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사전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준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보유부서는 데이터 표준에 대한 업무적 판단이나 검토를 수행한다.

제11조(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총괄부서는 데이터관리에 수반되는 표준, 모델, 메타데이터, 데이터 목록, 데이터 흐름 정보 등을 자산화하고, 업무 및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기 위하여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 관리 및 DB 관리를 수행한다.

제12조(연계데이터 관리) 데이터 총괄부서는 데이터 보유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공사 내부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 송·수신 활동에 관련된 표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연계 데이터 품질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변경 영향도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완전한 변화 대응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 흐름을 관리한다.

제13조(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보유부서는 데이터 총괄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품질진단, 오류분석, 개선 등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시스템 등 관리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오류데이터 신고관리) 데이터 총괄부서는 품질 오류 신고에 대해 데이터 보유부서와 협조하여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제1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데이터책임관은 공사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기획,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 활용 등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제16조(데이터 분석업무 처리) ① 공사의 모든 부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데이터 분석부서에 분석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부서는 실행 가능성, 필요성, 유효성 등을 종합 판단 후 데이터 분석 수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② 데이터 분석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의 데이터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공사는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장비, 정보시스템, 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운영 상호 연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처리 및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검증, 융합 등 제반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공공데이터 제공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데이터 분석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민간에 제공할 공공데이터를 선정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부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정한 경우
2.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3. 기타 데이터분석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의 데이터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공사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